

정당·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

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

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
▣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

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방송연설을 할 수 있음.

▣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

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음.

<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>

| 관련법 | 대 상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공직선거법 제 60 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※ 외국국적 취득자(시민권자) ○ 미성년자(19 세 미만인 자) ○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○ 대한민국 국가공무원, 지방공무원,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○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○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○ 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,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 | |

※ 모든 단체(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)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**대한민국**의 얼굴입니다

